

## 보호책임의 의의와 쟁점\*

The Concept and Issues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황 해 륙\*\*  
Hwang Haeryuk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보호책임의 등장과 발전
- III. 보호책임의 의의 및 주요내용
- IV. 보호책임의 국제법적 쟁점
- V. 맺으며

### 국문초록

인도적 개입의 합법성 논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1년 '개입과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에 의해 제시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은 이미 국제적 수준에서 상당부분 수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책임은 그 개념은 물론, 적용범위, 이행의 주체와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 중에 있다. 그 이유는 보호책임이 국제법상의 일반원칙들 특히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등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책임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 즉, 국내에서의 심각한 인도적 위

논문접수일 : 2012.03.30

심사완료일 : 2012.04.18

게재확정일 : 2012.04.24

\* 이 글은 필자의 2011년 8월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인간안보의 국제법적 실현에 관한 연구" 가운데 보호책임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법학박사, 경북대학교·대구대학교 강사

기상황은 여전히 빈발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 처한 민간인은 국제사회가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책임을 국제법에 있어서 확립된 법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보호책임의 법적 성격이 '연성법'(soft law) 또는 '생성 중인 규범'(emerging norm)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보호책임의 등장배경과 더불어 2001년 ICISS 보고서에서부터 2009년 반기문 사무총장(Secretary-General)의 보호책임의 이행(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보호책임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책임이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즉, 그 이론적 근거로서의 책임주권의 개념 및 적용요건 등을 살펴본다. 더불어 보호책임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특히, 보호책임의 적용범위와 이행주체 및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보호책임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범으로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주제어 : 보호책임, 인도적 개입, 인간안보, 보충성의 원칙, 개입과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

## I. 들어가며

지난 2011년 10월 20일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Muammar Qadhafi)의 사망으로 리비아의 내전상태는 막을 내렸다. 카다피의 사망으로 리비아의 민주화는 더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면에 리비아와 관련된 정치·경제적 이익을 들려싼 서방국가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이러한 리비아 사태의 정치·경제적 영향과는 별개로, 동 사태는 인도적 간섭 또는 보호책임과 관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리비아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결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한다) 결의 1973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정부의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국제공동

체의 책임을 역사적으로 확인한 사례<sup>1)</sup>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를 통하여 '보호책임'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UN헌장 제7장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안보리가 UN회원국에 대하여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면서 '리비아 당국의 주민을 보호할 책임'(the responsibility of the Libyan authorities to protect the Libyan population)을 군사적 개입의 승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sup>2)</sup>

캐나다 정부의 주도 하에 결성된 '개입과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이하 'ICISS'라 한다)가 작성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보고서를 통하여 처음으로 제시된 보호책임개념은 아직까지 그 정의와 인정근거는 물론 적용범위, 이행의 주체 등에 관하여 논란 중에 있는 개념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란은 역설적이게도 보호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호책임이 국가들이 예상보다는 쉽게 수용할 만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다. 즉, '의무'(obligation)가 아닌 '책임'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보호책임이 '무책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보호책임은 '보호의무'(obligation of protect)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sup>3)</sup> 만일 보호책임이 보호의무로서 받아들여진다면, 국가가 보호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곧 국가의

1)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리비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all necessary measures)를 승인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73(S/RES/1973, 17 March 2011)을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을 역사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동 결의의 즉각적 이행을 촉구하였다. UN News Centre, "Libya: Ban welcomes Security Council authorization of measures to protect civilians"〈<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7809&Cr=Libya&Cr1=>>〉(accessed 13 April 2011).

2) U.N. Doc. S/RES/1973, 17 March 2011, pp.1-2.

3) 이와는 달리 보호책임이라는 용어를 인도적 위기의 경우에 있어서, 국제공동체가 간섭할 권리로부터 간섭할 의무로의 전환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오병선,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과 정당성(Legality and Legitimacy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9, 261면; James Pattison,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15.

국제의무에 대한 위반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국제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보호책임은 아직까지는 그 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국제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특히 개별국가가 보호책임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거부감을 반감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4)</sup> 다른 한편으로 개별국가가 여전히 1차적 책임을 부담하고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은 2차적 책임에 머물러 있는 점 또한 국제사회가 보호책임을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만일 국제사회가 특정한 사태에 대하여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국제사회는 영역국의 1차적 보호책임을 강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책임을 수용하기 용이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호책임을 국제법의 실정규범으로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이론적 장애물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보호책임이 적용되는 상황 자체가 특정국가의 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보호책임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들 특히 국내 문제불간섭의 원칙,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등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을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우선 보호책임의 등장배경과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보호책임을 다루고 있는 국제문서들에 나타난 보호책임의 개념정의와 보호책임의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 및 보호책임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검토한다. 나아가 보호책임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호책임을 둘러싼 국제법적 쟁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보호책임이 가지는 국제법적 의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 II. 보호책임의 등장과 발전

### 1. 보호책임의 등장배경

4) 보호책임의 성격 자체가 확립된 법원칙이라기보다 생성 중인 지도원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무'(oblig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ICIS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2001, p.16.

보호책임은 1990년대 이후의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실패과정 및 그에 대한 반성과 궤를 같이 한다. 특히 1994년 르완다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적절한 대응, 1995년의 보스니아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실패, 1999년 코소보에 대한 NATO군의 안보리 승인 없는 개입은 인도적 개입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관한 논란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1994년 인간안보(human security)<sup>5)</sup>개념의 등장 역시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코피 아난(Kofi Annan) 전 UN사무총장은 20세기 마지막 UN총회 개막연설에서 “더 이상 주권이 인권과 인도적 위기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주권보다는 보편적 인권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여야 하며, 국가 역시 변화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sup>6)</sup> 나아가 ‘UN밀레니엄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문서’(UN Millennium Report)에서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은 “진실로 인도적 개입이 수용 불가능한 주권침해가 된다면, 르완다(Rwanda)나 스레브레니차(Srebrenica)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또한 우리의 공통규범인 인도규범에 위반하는 대규모의 조직적 인권침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sup>7)</sup>라고 반문하면서,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의 이러한 지적은 인도적 개입의 합법성에 관한 논의를 보호책임에 관한 논의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인도적 개입에 대한 대응규범 또는 대체규범의 하나로 보호책임이 대두된 것이다. 즉, 냉전 종식 후 분쟁의 양상이 국제적 성격으로부터 민족 또는 종족 간 분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파탄 또는 전시의 시민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둘러싼 인도적 개입과 주권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책임개념 즉, 보호책임이 제안된 것이다.

5)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용어는 1994년 UN개발계획(UNDP)이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U.N. Doc. SG/SM/7136-GA/9596, 20 September 1999.

7) ICISS, *op.cit*, synopsis: UN. Doc. A/54/2000, 27 March 2000, para.217.

## 2. 「보호책임」 보고서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캐나다 정부의 주도 하에 설립된 ICISS는 인도적 개입과 관련하여 '적법하고도 국가주권과 양립 가능한'(legally acceptable and compatible with state sovereignty) 적극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구를 개시하였다. ICISS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2001년 「보호책임」 보고서를 통하여 발표하면서, 개입의 결정 및 실시와 관련하여 명확한 국제적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동 보고서의 핵심은 보고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호책임' 개념이다. 동 보고서는 "국가가 UN헌장에 서명한다는 것은 주권의 대내적 기능과 대외적 의무라는 관점에서 '통제로서의 주권'(sovereignty as control)으로부터 '책임으로서의 주권'(sovereignty as responsibility)으로의 새로운 특징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종래의 인도적 개입과 관련한 주권과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즉,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주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섭함으로써, 책임주권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개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권은 책임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 국가의 국민을 보호할 1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은 해당 주권국가에게 있지만, 만약 한 국가의 국민이 내전, 반란, 억압 또는 국가실패로 인하여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고, 당해 국가가 이를 중지 또는 방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불간섭원칙보다는 국제적 보호책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8)</sup>

또한 동 보고서는 보호책임의 이행주체와 관련하여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만일 안보리가 정치적 상황이나 상임이사국에 의한 거부권행사 등으로 보호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Uniting for peace)에 기초한 UN의 문제검토 및 지역적 기구의 행동과 더불어 종국적으로는 개별 국가에 의한 군사적 행동까지 보호책임의 이행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있다.<sup>9)</sup>

8) ICISS, *op.cit.* synopsis.

동 보고서를 출발점으로 하여 국제사회에 있어서 인도적 개입에 관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인도적 개입의 권리'라는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인권보호의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 3. 「인간안보, 현재」 보고서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의 인도적 개입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한 또 하나의 응답으로써, 2003년 일본정부의 지원 하에 설치된 인간안보위원회(Commission on Human Security: 이하 'CHS'라 한다) 역시 인간안보를 안전보장의 문제로 인식함과 아울러 인도적 개입을 인간안보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sup>10)</sup> CHS가 UN에 제출한 「인간안보, 현재」(Human Security Now)<sup>11)</sup>라는 보고서는 인도적 개입과 관련하여 폭력을 동반하는 분쟁 하의 개인에 대한 보호는 국제사회의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동 보고서는 "분쟁 상황 하의 개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은 군사적 개입뿐만 아니라, 폭력을 수반하는 분쟁에 대한 예방책임<sup>12)</sup> 및 분쟁 상황 종결 후의 재건책임에 의하여 완성 된다"<sup>13)</sup>고 하여, 보호책임을 분쟁대처에 관한 일련의 과정(즉, 예방에서부터 재건까지)에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sup>14)</sup>

9) *Ibid.*

10) 瀧澤美佐子「人間の安全保障と國際介入-破綻國家ソマリアの事例から-」望月克哉編『人間の安全保障の射程』(アジア経済研究所, 2006), 112面。

11)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Human Security Now*, New York: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2003, 159p.

12) ICISS, *op.cit.*, p.62.

13) *Ibid.*, p.109.

14) 보호책임은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대응책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개입보다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James Pattison, *op.cit.*, p.13.

#### 4. 「더 안전한 세계: 우리 공동의 책임」

UN의 안전보장기능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UN사무총장에 의해 설치된 '위협과 도전,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이하 'HLP'라 한다)은 「더 안전한 세계: 우리 공동의 책임」(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UN의 능력강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위한 101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면서, 인종말살과 같은 대규모의 살해, 인종청소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집단적 보호책임이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1차적 보호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당해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국제사회가 집단적 보호책임에 입각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을 사용하여 행동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집단적 보호책임은 안보리의 수권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다고 하면서, 보호책임과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의 충돌을 UN헌장 제7장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sup>15)</sup> 다만, 동 보고서는 「보호책임」 보고서와는 달리 안보리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 5. 「2005 세계정상회의 성과문서」

보호책임은 「2005 세계정상회의 성과문서」(2005 World Summit Outcome)<sup>16)</sup>에서도 채택되었다. 동 문서는 보호책임과 관련하여 “국가들은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대한 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고 설명한다.<sup>17)</sup> 나아가 국제공동체의 책임과 관련하여 “국제공동체는 UN을 통하

---

15) 다만, 인권보호를 위한 헌장 제7장에 근거한 강제조치는 안보리의 기존의 관행 즉, 대규모 인권침해 사태를 헌장 제39조에 근거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하여 무력사용을 허가하던 관행을 고려하면, 굳이 집단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비판도 있다.

16) U.N. Doc. A/RES/60/1, 24 October 2005.

여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UN헌장 제6장 및 제8장에 따라 외교적, 인도적 또는 다른 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평화적 수단이 부적절하고, 국가 당국이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대한 죄로부터 영토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데 ‘명백하게 실패한’(manifestly failing to protect) 경우에, 우리는 현장 제7장에 따라 사안별로(case-by-case),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지역기구와 협력하며, 안보리를 통하여 적시에 그리고 단호한 방법으로 집단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sup>18)</sup>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개별 국가에 의한 군사적 개입은 배제되며, UN헌장 제7장에 근거하는 안보리 승인에 의한 개입만이 보호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2005 세계정상회의 성과문서」는 UN총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지만, 안보리의 수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일방적 인도적 개입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 6. 「보호책임의 이해」 보고서

2009년 1월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보호책임의 이행」(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sup>19)</sup>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는 「2005 세계정상회의 성과문서」 제138항 및 제139항에 언급된 보호책임이 UN총회와 안보리에 의해 승인<sup>20)</sup>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05 세계정상회의 성과문서」의 보호책임은 인도적 개입이라는 좁은 사고보다는 책임으로서의 주권이라는 긍정적이고 확실한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또한 보호책임은 UN회원국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다음 4가지의 범죄 즉,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17) *Ibid.*, para.138.

18) *Ibid.*, para.139.

19) U.N. Doc. A/63/677, 12 January 2009.

20) 안보리 결의에서 처음으로 보호책임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안보리 결의 1674호에 의해 서이다. 동 결의에서도 역시 「2005 세계정상회의 성과문서」의 보호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U.N. Doc. S/RES/1674, 28 April 2006.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sup>21)</sup>

더욱이 보호책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기후변화, 자연재해, HIV/AIDS 등의 문제에 대하여 보호책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005 세계정상회의 성과문서」의 합의 외에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sup>22)</sup> 또한 보호책임의 이행에 있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보호책임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sup>23)</sup>

그 후 2009년 9월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18개국은 2005 「세계정상회의 성과문서」와 반기문 총장의 「보호책임의 이행」 보고서에 주목하면서, 보호책임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다음 총회에서 다를 것을 제안하였다.<sup>24)</sup> 그 결과 2009년 9월 14일 UN총회는 총의로서 '보호책임'(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제하의 결의를 총의로서 채택하였다. 동 결의 역시 「2005 세계정상회의 성과문서」 제138항 및 제139항의 보호책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 III. 보호책임의 의의 및 주요내용<sup>25)</sup>

#### 1. 보호책임의 의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책임은 그 개념이 제시된 이후 「2005 세계정상회의 성과문서」를 기점으로 하여 보호책임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보호책임의 개념정의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호책임은 보호책임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광의의 보호책임과 협의의 보호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sup>26)</sup>

광의의 보호책임은 ICISS의 「보호책임」보고서와 CHS 「인간안보, 현재」보고

21) U.N. Doc. A/63/677, 12 January 2009, para.10.

22) *Ibid.*, para.10

23) *Ibid.*, para.61.

24) U.N. Doc. A/63/L.80, 1 September 2009.

25) 여기에서는 ICISS의 보호책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6) 박기갑 등, 「(국제법상)보호책임」, 초판, 삼우사, 2010, 112-113면.

서, HLP의 「더 안전한 세계」에서 제시되는 보호책임으로써, 보호책임이 적용되는 상황을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국가의 실질적인 붕괴 내지 국가실패로 인하여 민간인이 내란 또는 대규모의 기아사태에 직면하는 경우, 또는 자연적 재해 또는 환경파괴로 인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sup>27)</sup>로 확대한다.

반면, 「2005 세계정상회의 성과문서」, 2006년 안보리 결의 1674, 2009년 UN 사무총장의 「보호책임의 이행」 보고서는 보호책임의 적용범위를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라는 네 가지 범죄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협의의 보호책임이라 한다.

「2005 세계정상회의 성과문서」 이후 논의되는 보호책임은 협의의 보호책임에 한정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경향은 2009년의 「보호책임의 이행」 보고서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요청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호책임에 관한 논의를 UN헌장의 범위 내로 한정하려는 의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사법, 국제인도법 관련문서에서 그 개념정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점을 고려한다면, 보호책임에 대한 국가들의 합의가 보다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sup>29)</sup> 「보호책임」 보고서 이후 보호책임에 반대하는 개발도상국의 의견이 반영된 이러한 형태의 보호책임은 「보호책임」 보고서에 비하여 후퇴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27) 자연적 재해 또는 환경파괴로 인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호책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고, 또한 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의지가 없을 것을 추가적으로 요한다. ICISS, *op.cit*, p.33.

28) 「2005 세계정상회의 성과문서」 이후 국가의 실질적인 붕괴 내지 국가실패로 인하여 민간인이 내란 또는 대규모의 기아사태에 직면하는 경우 또는 자연적 재해 또는 환경파괴로 인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보호책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자연적 재해 상황 하에서의 인명피해와 관련하여서는 2007년 이후 국제법위원회(ILC)에서 '재난 시 사람의 보호'(Protection of person in the event of disasters)라는 주제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호책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국가실패로 인해 내란 또는 기아사태에 민간인이 직면하는 경우이다. '재난 시 사람의 보호'에 관한 자세한 작업현황은 국제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법위원회 홈페이지<[http://untreaty.un.org/ilc/guide/6\\_3.htm](http://untreaty.un.org/ilc/guide/6_3.htm)>

29) 박기갑 등, 전계서, 118면.

## 2. 보호책임의 기본원칙과 이론적 근거

ICISS의 「보호책임」 보고서는 인도적 개입논의에서 제기된 과제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원칙과 절차 및 기준을 결정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동 보고서는 “내전·반란·억압과 국가파탄 상태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sup>30)</sup>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합의의 기반으로서 보호책임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보호책임의 1차적인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가 보호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차적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이 부각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인도적 개입<sup>31)</sup>과 주권의 충돌문제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주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서 ‘책임으로서의 주권’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주권개념 자체에는 본질적으로 ‘통제로서의 주권’뿐만 아니라 ‘책임으로서의 주권’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보호책임의 근거를 책임으로서의 주권에서 도출함으로써 주권개념과의 갈등을 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책임으로서의 주권’은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주권의 내용으로 포섭함으로써, 책임주권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개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인도적 개입을 권리개념 즉, ‘개입의 권리’(right to intervene)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개입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누가 개입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개입할 책임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sup>32)</sup> 인도적 개입이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 개입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급박한 필요성보다는 개입하는 측의 강압이나 요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입을 필요로 하는 희생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sup>33)</sup>

30) ICISS, *op.cit.*, synopsis.

31) 보고서는 의식적으로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라는 어휘의 사용을 회피하고, 인간보호 목적의 개입(intervention for human protection purpos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인도주의의 군사화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濑澤美佐子, 前掲論文, 112面.

32) 보호책임을 의무로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누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 James Pattison, *op.cit.*, p.12.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ICISS는 보호책임을 위한 2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주권은 국가의 독립과 완전성의 보호와 동시에 자국민의 보호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내전, 반란, 억압, 국가파탄의 결과, 심각한 위해에 처한 개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한 위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 않거나, 위협요소를 제거하려 하지 않는 국가는 더 이상 불개입원칙을 주장할 근거를 상실하며, 불개입원칙은 국제적인 보호책임에 자신의 역할을 양보하여야 한다.<sup>34)</sup>

나아가 ICISS는 보호책임의 2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보호책임의 근거로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권개념에 내재하는 고유의 책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술한 책임으로서의 주권개념에 관한 논의가 포함된다. 둘째, UN헌장 제24조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안보리의 1차적 책임이다. 여기에는 안보리가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헌장 제7장에 따라 정당화되는 강제조치를 취해왔던 관행이 포함된다.<sup>35)</sup> 셋째, 인권과 인간보호선언, 규약과 조약, 국제인도법과 국내법에 근거한 특별한 법적 의무이다. 여기에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법적 의무 즉 자연법, UN헌장 상의 인권규정, 세계인권선언과 집단살해방지협약, 1949년 제네바 제협약과 1977년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제1, 제2 추가의정서 및 2005년 제3 추가의정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다수의 인권 및 인권보호 협정과 협약이 포함된다.<sup>36)</sup> 넷째, 국가·지역기구 및 안보리의 발전중인 관행이다.

### 3. 보호책임의 요소

보호책임이 인도적 개입을 권리의 관점에서가 아닌 책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결과, 보호책임에는 ① 내전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과 주민을 위험에 노출하는 인위적인 위기에 대한 예방책임(the responsibility to prevent),

33) ICISS, *op.cit*, p.17.

34) *Ibid.*, synopsis.

35) *Ibid.*, p.16.

36) *Ibid.*, p.16.

② 제재 또는 국제적 소추,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 군사적 개입과 같은 적절한 수단을 통한 대응책임(the responsibility to react), ③ 대응책임이 종료한 후 지속적인 평화의 확립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충돌집단간의 화해를 위한 충분한 원조 등의 재건책임(the responsibility to rebuild)이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책임 가운데 예방책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국제사회가 개입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예방이 검토되어야 하며, 더 많은 책임과 자원이 예방책임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는 군사적 개입을 시도하기 이전에 우선 인도적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분쟁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분쟁 또는 인도적 위기와 관련된 상황이나 위험에 대한 인식, 즉 조기경보(early warning)와 상황을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들에 대한 이해, 즉 예방도구(preventive toolbox) 그리고 그러한 수단들을 사용하려는 의지, 즉 정치적 의지(potitical will)라는 세 가지의 기본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sup>37)</sup>

#### 4. 군사적 개입을 위한 원칙

인간보호를 위한 군사적 개입은 그 자체로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수단이므로, 예방책임이 분쟁을 방지하지 못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가능하면 단기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또한 군사적 개입은 정당한 근거를 획득하기 위하여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으며 그 발생이 임박한 다음의 2가지 정당한 상황 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은 ① 집단살해의 의도의 유무에 관계없이 계획적인 국가의 행동이나 국가의 태만 또는 무능력 또는 파탄국가의 상황의 결과로 인한 대규모 인명손실의 현실적 발생 또는 그 우려 ② 현실에서 발생한 혹은 염려되는 살해, 강제추방, 잔학행위나 강간(rape)에 의해 실행된 대규모의 인종청소가 그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의 개입일지라도 보호책임에 근거한 군사적 개입은

---

37) *Ibid.*, p.20.

정당한 권위(right authority) 하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정당한 의도(right intension), 최후 수단성(last resort), 균형 잡힌 수단(proportional means), 그리고 합리적 예측(reasonable prospects)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허용된다.<sup>38)</sup>

군사적 개입은 개입하는 국가의 다른 동기를 불문하고, 그 1차적 목적이 인권침해를 중지시키는 것 즉,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을 저지하는 데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도는 개입대상지역의 의견이나 관계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명확히 지지되어야 한다. 또한 군사적 개입은 위기의 예방이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모든 비군사적 선택이 검토된 후, 군사력의 사용에 미치지 않는 조치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군사력의 사용에 미치지 않는 조치에는 경제제재, 정치적 제재 등 비군사적 강제조치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의 부탁 등 모든 예방조치가 포함된다. 계획된 군사적 개입의 규모, 기간, 강도는 인간의 보호라는 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개입에 의한 결과가 불개입에 의한 결과보다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sup>39)</sup>

군사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 및 목적, 수단의 적절성이 확보된 경우라 할지라도 군사적 개입은 정당한 권위 하에 실행되어야 한다. 우선 인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개입에 정당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기관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안보리<sup>40)</sup>이며, 안보리는 대규모 인명의 손실이나 인종청소가 발생한 지역에 있어서 개입을 위하여 필요한 권위와 관련한 어떠한 요구에도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인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개입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결의의 통고를 방해하기 위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sup>41)</sup> 만약 안보리가 필요한 시기에 제안을 거부하거나 대처하는 것이

38) *Ibid.*, synopsis.

39) 望月克哉編「アフリカにおける人間の安全保障の射程：研究會中間成果報告」(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2003), 48面。

40) 안보리는 정당한 권위의 원천이며, 현재의 안보리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더욱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ICISS, *op.cit.*, synopsis.

41) 이는 상임이사국이 어떠한 인도적 행동도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 건설적 기권을 선택하도록

가능하지 않다면, ①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에 기초한 UN총회 긴급특별회의에서의 문제의 검토 또는 ② 안보리로부터의 수권을 요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UN현장 제8장에 근거한 지역적 또는 준지역적 기구에 의한 관할범위 내의 행동으로 대체될 수 있다. 만일 행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에도 안보리가 보호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관계 각국은 그 상황이 가지는 중대성이나 긴급성에 적합한 다른 수단을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sup>42)</sup>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군사적 개입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명확한 명령계통을 구축한 상황 하에서 인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다. 또한 보호책임을 수행하는 개입주체는 국제인도법이 규정하는 교전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인도적 기관과 최대한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sup>43)</sup>

## IV. 보호책임의 국제법적 쟁점

보호책임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로서의 책임주권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보다는 보호책임의 실질적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보호책임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둘째, 국제사회가 실제로 보호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권한은 누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가? 셋째, 보호책임의 이행권한을 안보리에 위임하는 경우 만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의하여 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

하여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의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 青井千由紀「人道的介入と國連改革-『保護する責任』概念の検討」松井芳郎編「人間の安全保障と國際社會のガバナンス」(日本評論社, 2007), 88面。

42) ICISS는 보호책임의 이행권한과 관련하여 안보리와 보조적으로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의 절차에 따른 UN총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2004년 이후 문서들에서 이러한 권한은 안보리의 권한으로 단일화시키고 있다. 즉, 보호책임의 이행을 UN현장 제7장에 근거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2005년의 UN사무총장 보고서는 안보리의 거부권행사로 인하여 집단살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개별국가에 의한 일방적 행위를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박기갑 등, 전개서, 135면.

43) ICISS, *op.cit*, synopsis.

이 가능한가? 넷째, 보호책임이 채택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complementarity)과 관련한 이른바 '보충성의 함정'(complementarity trap)<sup>44)</sup>의 문제가 그것이다.

첫째, 앞서 살펴본 바대로 보호책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ICISS가 광의의 보호책임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하여 최근의 국제적 문서들은 협의의 보호책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보호책임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로 언급되는 2011년 리비아 사태에 대한 안보리 결의 1973이 리비아 당국의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조치를 승인하고 있는 점과 안보리 결의 1970<sup>45)</sup>을 통하여 리비아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 점을 고려하면, 리비아 사태가 협의의 보호책임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향후 보호책임에 관한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UN에서 보호책임의 범위와 관련된 새로운 논의 내지 시도가 이루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책임에 관한 국제문서들은 보호책임의 이행주체를 1차적으로 국가에 한정하면서, 국가가 1차적 책임을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2차적 책임의 주체인 국제공동체가 보호책임을 이행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보호책임을 다루는 문서들은 국제사회가 보호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특히 무력사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호책임의 이행권한과 관련하여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호책임」 보고서의 경우, 1차적으로 안보리에 대하여 무력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다만 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평화를 위한 단결' 절차에 따라 UN이 보호책임의 이행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안보리의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UN헌장 제8장에 따른 지역기구의 활용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sup>46)</sup> 반면,

44) Carsten Stahn, "Responsibility to Protect: Political Rhetoric or Emerging Legal Norm?",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1, No. 1, 2007, pp.99-120.

45) U.N. Doc. S/RES/1970, 26 February 2011.

46) 2009년 '보호책임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도 ICISS와 마찬가지로 지역기구 및 UN총회의 활용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UN. Doc. A/63/677, 12 January 2009, p.25.

보호책임에 관한 다른 국제문서들은 안보리에만 이행권한을 부여하거나, 심지어 국가에 의한 일방적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기관으로서의 안보리가 가장 적합한 보호책임의 이행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큰 논란이 없지만, 지역기구와 UN총회의 이행권한 및 일방적 개입의 허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안보리에 보호책임의 이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상임이사국의 국가이익<sup>47)</sup>과 관련하여 보호책임의 이행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어떻게 실효적인 대응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사실상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이 의심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선택적 개입 또는 안보리의 소극적 태도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ICISS는 안보리가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평화를 위한 단결'절차에 따라 UN총회가 보조적으로 보호책임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안보리의 보조기관으로서 '보호책임에 관한 안보리 산하위원회'(Responsibility to Protect Security Council Sub-Committee)를 설립하자는 제안이다.<sup>48)</sup> 이는 글로벌 대배심(Global Grand Jury)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안보리 산하위원회에 보호책임의 이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감시권한과 정보수집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의지'(world's will)를 담은 특별권고를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문제는 안보리 개혁에 관한 중요한 의제로도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sup>49)</sup> 특히 보호책임의 이행권한과 관련하여 사실상 보호

---

47) 상임이사국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은 주로 대상지역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적 정치상황과 관련한 이익 및 군사적 전략과 연관되는 경우도 있다. Neville F. Dastoor, "The Responsibility to Refine: The need for a Security Council Committee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 22,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2009, pp.32-43.

48) *Ibid.*, pp.49-55.

49) UN에서 안보리 개편 문제는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소위 G4(독일, 브라질, 인도, 일

책임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2009년 반기문 사무총장이 「보호책임의 이행」 보고서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보호책임의 이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거부권 행사를 자체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sup>50)</sup>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넷째, 이른바 '보충성의 합정'과 관련한 문제이다. 보호책임을 다루는 UN의 문서들은 모두 보충성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보호책임의 이행과 관련한 보충성의 원칙은 국가가 자국민에 대한 1차적 보호책임을 부담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국제사회가 보충적으로 보호책임을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책임의 이행을 위한 조건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한 것은 보충성의 원칙이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데 있어서 성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sup>51)</sup>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동 원칙은 실제로는 보호책임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보호책임을 제약하는 원칙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5년 세계정상회의 성과문서」 제139항이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집단 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영토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데 명백하게 실패한 경우'에 있어서의 '명백한 실패'(manifestly fails)라는 조건은 그 해석과 관련하여 오히려 국가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의 이행을 저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sup>52)</sup> 즉, 국가의 1차적 책임의 '명백한 실패'라는 모호한 용어가, 국가로 하여금 자신들은 여전히 1차적 책임의 이행에 '명백하게는' 실패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입의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비상임 이사국 확대만을 원하는 Uniting for Consensus Group(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캐나다, 터키, 파키스탄, 콜롬비아, 한국) 및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2석을 요구하는 AU 등의 대립으로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신각수, "인권이사회 설립과 국제인권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6, 91면.

50) 2009년 '보호책임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도 ICISS와 마찬가지로 지역기구 및 UN총회의 활용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UN. Doc. A/63/677, 12 January 2009, pp.26-27.

51) Carsten Stahn, *op.cit.*, p.117.

52) *Ibid.*

그 밖에 보호책임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문제로는 과연 보호책임이 국제법 및 UN현장 제2조 4항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무력사용금지원칙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즉, 보호책임을 국제법 규범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UN현장 상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서 UN현장 제51조 상의 자위권의 행사와 UN현장 제7장의 강제조치 이외에 보호책임에 근거한 무력의 사용이라는 새로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호책임을 현장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려는 현재까지의 국제문서들의 태도와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 V. 맷으며

보호책임이라는 개념은 언뜻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린다.<sup>53)</sup> 2001년 ICISS에 의해 제시된 보호책임은 2004년 HLP의 보고서 「더 안전한 세계: 우리 공동의 책임」에서 UN개혁 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더 안전한 세계: 우리 공동의 책임」 보고서는 '피할 수 있는 재앙'(avoidable catastrophe)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모든 국가의 보호책임을 생성 중인 규범(emerging norm)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sup>54)</sup> 2005년 부트로스 갈리 UN사무총장은 「더 큰 자유」(In Larger Freedom)에서 "우리는 기꺼이 보호책임을 받아들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호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55)</sup> 보호책임의 수용에 관한 UN의 입장은 2005년의 총회결의 60/1<sup>56)</sup>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총회 및 사무총장의 보호책임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언급과는 달리 안보리 차원의 언급은 2006년 무력충돌상황에서의 시민의 보호에 관한 안보리 결의 1674호<sup>57)</sup>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UN내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53) *Ibid.*, p.99.

54) U.N. Doc. A/59/565, 2 December 2004, paras. 201-202.

55) U.N. Doc. A/59/2005, 21 March 2005, para.135.

56) U.N. Doc. A/Res/60/1, 24 October 2005.

57) U.N. Doc. S/Res/1674, 28 April 2006.

캐나다와 일본 등 일부 국가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미얀마, 북한,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보고서가 선진국에게 개발도상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77개국 그룹(G77)에 이 보고서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책임에 관한 의제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제법 학계 역시 이에 관한 논의는 찬반의 대립이 있다. 즉, 보호책임은 주권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주권을 약화시키는 교활한 독트린(doctrine)이며,<sup>58)</sup> 군사적 개입은 어떠한 경우라도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의 이행이 안보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또한 그 적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실제 개입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는 사실상 개입할 수 없는 모순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더불어 결국 보호책임의 이행은 결국 강대국의 의사에 달려있다는 현실적인 비판도 가해진다.<sup>59)</sup>

반대로 보호책임의 이행을 위한 엄격한 요건은 국가주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도상국들에게 강대국의 일방적 개입에 대항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하는 입장과 인간안보를 위한 불가결한 방법론으로서의 보호책임에 근거한 인도적 개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sup>60)</sup>

그러나 보호책임은 그와 관련된 평가가 개입하고자 하는 측에서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측의 시각에서 이루어질 것을 의도하고 있다. 또한 인권에 관한 국제적 관심과 지구공동체라는 사고의 발달은 주권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주권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책임은 기존의 인도적 개입의 논의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의 안보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국가의 인권보호책임을 주권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58) 실제로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입각한 보호책임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캐나다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하면서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望月克哉編, 前揭書, 53面.

59) Paul M. Evans, “인간안보와 동아시아: 그 시작에 즈음하여”, 「국제관계연구」 제11권 2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20면.

60) 饒場和彥「人間の安全保障論と人道的介入: ルワンダのジェノサイドを事例に方法論的な観点から」國際安全保障 第30卷 3號(國際安全保障學會, 2002), 57-59面.

기존의 인도적 개입과 주권과의 충돌문제를 새로운 개념에 의한 규범적 대응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은 보호책임이 가지는 가장 큰 국제법적 의의일 것이다.

보호책임은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규범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호책임이 의도하는 것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이 예정하고 있는 주권국가의 인간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국제사회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sup>61)</sup> 이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보호주체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심각한 비인도적 상황 하에서 국제법상의 보호법익이 주권보다는 인권 및 인도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sup>62)</sup>

다만, 개입의 권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인 보호책임은 국제법상의 국제책임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보호책임이 국제사회에 대하여 보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보호책임은 국제사회의 개별주체들에 대하여 의식으로서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개념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사회가 이를 보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에 의해 야기된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보호책임의 기본원칙 즉, UN헌장 체제 내에서의 보호책임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보호책임을 국제법에 있어서 확립된 법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다. 보호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해 ‘연성법’(soft law) 또는 ‘생성 중인 규범’(emerging norm)이라고 하여 규범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 반면, ‘생성 중인 정치적 개념’(emerging political concept)으로 그 의미를 폄하하는 입장이 있다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sup>63)</sup>

그러나 보호책임논의가 진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보호책임 논의가 국제기구, 특히 UN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보호책임에 관하여 더 명확한 내용을 담으려는 그간의 노력은 보호책임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범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1) 望月克哉編, 前掲書, 49面.

62) 望月克哉編, 前掲書, 50面.

63) 한겨례신문사, “R2P는 리비아의 운명을 바꿀까”, 한겨례 21, 2011.04.01, 제854호.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박기갑 등, 「(국제법상)보호책임」, 초판, 삼우사, 2010.
- 신각수, “인권이사회 설립과 국제인권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6.
- 오병선,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과 정당성(Legality and Legitimacy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9.
- Paul M. Evans, “인간안보와 동아시아: 그 시작에 즈음하여”, 「국제관계연구」 제11권 2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 [국외문헌]

-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Human Security Now*, New York: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 2003.
- ICIS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2001.
- James Pattison,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Carsten Stahn, “Responsibility to Protect: Political Rhetoric or Emerging Legal Norm?”,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01, No. 1, 2007.
- Neville F. Dastoor, “The Responsibility to Refine: The need for a Security Council Committee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 22,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2009.
- 瀧澤美佐子 「人間の安全保障と國際介入-破綻國家ソマリアの事例から-」 望月克哉編『人間の安全保障の射程』(アジア経済研究所, 2006).

望月克哉編 『アフリカにおける人間の安全保障の射程： 研究會中間成果報告』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2003).

青井千由紀 「人道的介入と國連改革-『保護する責任』概念の検討」 松井芳郎編  
『人間の安全保障と國際社會のガバナンス』(日本評論社, 2007).

饗場和彦 「人間の安全保障論と人道的介入： ルワンダのジェノサイドを事例に  
方法論的な觀点から」 國際安全保障 第30卷3號(國際安全保障學會, 2002).

[기타참고자료]

국제법위원회 홈페이지<[http://untreaty.un.org/ilc/guide/6\\_3.htm](http://untreaty.un.org/ilc/guide/6_3.htm)>

UN News Centre, "Libya: Ban welcomes Security Council authorization of  
measures to protect civilians"<<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7809&Cr=Libya&Cr1=>>

U.N. Doc. SG/SM/7136-GA/9596, 20 September 1999.

U.N. Doc. A/54/2000, 27 March 2000.

U.N. Doc. A/59/565, 2 December 2004.

U.N. Doc. A/59/2005, 21 March 2005.

U.N. Doc. A/RES/60/1, 24 October 2005.

U.N. Doc. S/RES/1674, 28 April 2006.

U.N. Doc. A/63/677, 12 January 2009.

U.N. Doc. A/63/L.80, 1 September 2009.

U.N. Doc. S/RES/1973, 17 March 2011.

[Abstract]

The Concept and Issues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wang Haeryuk

Lectur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Daegu University

As a solution to debate on legal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lso called R2P, proposed by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ICISS) in 2001, have been generally accept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However, for R2P, its concept, scope of application and subjects of implementation are still under debate.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general principles in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and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with respect to R2P.

However, a situation to which R2P should be applied, in other words, a serious humanitarian crisis, has still occurred very often. In such situation, civilians expect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regular measures against the nation that uses armed force. Even so, it isn't not yet regarded right interpretation to understand R2P as a legal concept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law. The reason why is because R2P has remained as 'soft law' or 'emerging norm', in relation to legal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of debates on R2P, as well as its advent background, will be first examined, with ranges from 2001 ICISS Report to Secretary-General Ban Ki-moon's report o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2009. Then, based on these points, core contents of R2P, such as concepts of sovereignty as responsibility as theoretical grounds and their application requirements, will be also examined. Moreover, the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of R2P as more concrete and legal norm will be investigated, after review on problems of R2P, especially, its scope of application, subjects of implementation and international law issues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Key Words** :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Humanitarian Intervention, Human Security,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ICISS).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규정

전문개정 2010. 10. 8. 규칙 제91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이론과 실제를 연구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특성화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과 정책에 관한 학제적 연구와 산학간 협력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된 정책을 연구·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3조(업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국내·외 학술행사 및 공개강좌 개최
3. 간행물의 발간
4.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학술교류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및 부소장)** ①연구소에 소장 및 부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소장은 연구소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④부소장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조직)** ①연구소에 비교법연구센터,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법연구센터, 국제법무연구센터, 평화·인권연구센터 및 연구지원실을 둔다.

②각 연구센터는 연구계획의 수립 및 연구과제의 수행 등 관계분야의 연구

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연구지원실은 기획·연구업무의 지원, 연구자료의 수집·관리 및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연구센터) ①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제주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연구능력이 탁월한 국내·외 인사 중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연구지원실) ① 연구지원실에 연구지원실장을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지원실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8조(조교 및 직원) 연구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교 및 직원을 들 수 있다.

제9조(연구원) ① 연구소의 각 센터에 연구원, 전임연구원과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법학관련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장의 명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국내·외 연구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전임연구원은 유급을 원칙으로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다.

④ 특별연구원은 연구수행상 필요한 경우 연구관련 분야의 국내·외 적격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부소장과 각 연구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특성화와 관련된 학내 및 외부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및 내규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편집위원회) ①연구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의 운영과 학술지 발간을 위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2조(학술지 발간) ①연구소는 『법과정책』과 『국제법무』 등 2종의 전문학술지를 발간한다.

②학술지는 각 종류별로 매년 2회 이상 발간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 기금, 보조금과 연구용역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4조(세부사항)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10. 10. 8. 규칙 제9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학술지 논문심사규정

2005.12.22. 제 정  
2008. 8.18. 전면개정  
2009. 2. 2. 일부개정  
2010. 1.19. 일부개정  
2011. 1.25. 일부개정  
2011.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과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법과정책' 및 '국제법무'(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논문의 범위)** ①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법학이 주된 내용이어야 한다. '법과정책'에는 법학일반과 정책학 관련 논문을, '국제법무'에는 국제법무와 관련된 법학논문을 게재범위로 한다.

②게재논문은 다음의 범위의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하고 편집위원회의 최종 게재결정을 얻은 논문에 한한다. 다만, 1, 2, 3.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2. 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특별기고논문
3. 연구소의 요청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획논문
4. 공인된 대학(교)의 전·현직 교수의 투고논문
5. 박사학위소지자의 투고논문
6. 공인된 법률분야 종사자의 투고논문
7.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박사과정생(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 석사과

정생 포함)은 연구원과 공동으로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박사과정생이 단독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연구원 1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1. 4. 19.)

8. 판례평석, 자료, 서평 등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심사대상 투고논문) ① 투고논문은 연구소 학술지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 투고논문은 그 내용이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논문심사 대상은 원고마감일까지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④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선임) ① 심사위원은 법학전공 교수 및 연구원, 해당분야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 가운데 편집위원회가 선정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1. 19.)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1편당 3명을 위촉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심사위원이 당해 발간예정 호당 3편을 초과하여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개정 2010. 1. 19.)

③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및 방법) ① 투고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연구목적의 명료성
2. 분석의 염밀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의 및 구성의 타당성
5. 관련문헌 취급의 정확성
6. 연구결과의 의의
7. 문장의 독이성

8. 논문의 독창성

9. 논문제목의 적합성

10. 관련분야에 미칠 파급력 (신설 2010. 1. 19.)

11. 연구수준 향상의 기여도 (신설 2010. 1. 19.)

②심사위원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각 항목 당 '심각한 문제', '경미한 문제', '적절함', '우수함', '관련 없음'으로 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제재 가', '수정 후 제재', '수정 후 재심사', '제재 불가'로 판정한다. 경미한 보완사항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 가'로 판정하고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심사절차) ①각 투고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심사된다.

②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논문심사의뢰서 및 논문심사평가서(별지서식 1)와 함께 각 논문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이 때 심사의뢰 논문은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심사위원은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평가서를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 또는 '제재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보고 및 통보) ①편집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평가는서를 종합하여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서식 2).

②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 제재가부 또는 보완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별지서식 3).

③'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논문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사의 경우 이전의 논문심사위원 가운데 1인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제재 결정) (개정 2011. 1. 25.) ①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아래의 표의 기준에 따라 각 투고논문의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②아래의 표에 따른 기준외의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판정여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또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 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또는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또는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또는 수정후 게재

제9조(비밀유지의무) 각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0조(논문게재절차) ①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②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개정) 이 규정은 법과정책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4조 1항, 2항, 제5조 1항의 10, 11호, 제8조는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8조는 201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2조 2항 7호는 201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1

별지서식2

별지서식3

〈서식 1〉

## 투고논문 심사의뢰서

안녕하십니까?

논문심사를 허락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대학교 법 과정책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선생님의 연구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저희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법과정책'(또는 '국제법무') 제00집 제00호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래의 논문을 첨부된 양식에 의하여 논문을 심사한 후 각 심사논문 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술지의 질적 수준은 선생님의 엄정한 평가에 힘입어 더욱 발전적인 개선이 거듭될 것입니다. 수정의견과 게재불가 사유는 물론 무수정 게재의 경우에도 논문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심사 논문 : 0000000000(논문제목) 등 0 편
2. 심사평가서 제출시한 : 2\*\*\*년 \*\*월 \*\*일까지

2\*\*\*. \*\*. \*\*.

법과정책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장 0 0 0

0 0 0 귀하

## 논문 심사평가서

논문 제목 :

### 1. 논문의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심각한 문제	경미한 문제	적절함	우수함	매우 우수함	관련 없음
1. 연구목적의 명료성						
2. 분석의 엄밀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5. 관련문헌의 취급						
6. 연구결과의 의의						
7. 문장의 독이성						
8. 논문의 독창성						
9. 논문제목의 적합성						
10. 관련분야에 미칠 파급력						
11. 연구수준 향상의 기여도						

### 2. 논문 관련영역에 대한 연구기여도 평가

평가 항목	전혀 없다	미미 하다	약간 있다	크다	매우 크다	관련 없음
1. 연구주제의 중요성						
2. 이론적 기여도						
3. 방법론적 기여도						
4. 연구결과의 실용성						

### 3. 논문에 대한 총평(해당항목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 : A( ), B( ), C( ), D( )
2. 아래 평가 항목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재 가  
----- 수정 후 계재  
----- 수정 후 재심사  
----- 계재 불가

4.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제목 :
- 심사결과 : 계재 가( ), 수정후 계재( ), 수정후 재심사( ),  
계재불가( )
- 심사의견 :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국제법무) 제00집 제00호 계재신청논문 심사의견  
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 \*\*. \*\*.  
심사위원 0 0 0 (인)

법과정책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2〉

## 법과정책(국제법무) 투고논문 심사결과 종합보고서

법과정책(국제법무) 제00집 제00호에 게재신청논문에 대한 논문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1. 심사결과 종합

구분	심사결과				계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논문편수					

### 2. 논문심사결과

일련번호	논문저자	논문제목	심사위원			판정
			가	나	다	
1	000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2	000					
3	000					
..	..					

첨부 : 심사위원별 논문심사평가서 00부 끝

2\*\*\*. \*\*. \*\*.

편집위원장

(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장 귀하

〈서식 3〉

### 법과정책 게재신청논문 심사결과서(통보용)

법과정책연구소 학술지 법과정책(또는 국제법무) 제00집 제00호에 게재할 논문을 투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을 별첨과 같이 통보합니다.

보완 및 수정사항을 보완하고 2\*\*\*. \*\*. \*\*. 까지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제목			
투고자소속		성명	
심사결과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심사요지	별첨		

첨부 : 1. 심사위원별 심사의견서 3부(〈서식 1〉 각 심사위원별 논문심사평가서의 4. 논문심사의견서를 심사위원 명을 삭제하고 첨부)  
 2. 투고논문 수정본 1부 끝

2\*\*\*. \*\*. \*\*.

법과정책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장

0 0 0 귀하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학술지 논문투고규정

2005.12.22. 제 정

2008. 8.18. 전면개정

2010. 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과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법과정책'과 '국제법무'(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될 논문의 작성 요령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구성) ①논문은 제목, 영문제목, 저자명, 영문저자명, 목차, 국문 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 순서로 작성한다.

②필요한 때에는 제목 다음에 부제목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국한문 제목은 행을 바꾸어 대시(-)를 넣고, 외국어 제목은 콜론(:)을 넣어 표시한다.

③목차는 장(I, II) 또는 절(1, 2)까지만 작성하며, 주제어는 4-5개를 표기한다.

④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 등 3단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표기상 '서론(序論)'으로 했을 때는 '결론(結論)'으로, '서언(序言)'이라고 했을 때는 '결언(結言)'으로, '머리말'이라고 했을 때는 '맺음말'로, '처음에'라고 했을 때는 '끝으로' 등으로 한다.

⑤계층기호는 장번호 : I, II, …, 절번호 : 1, 2, …, 항번호 : 가, 나, …, 목번호 : (1), (2), …, (가), (나), … 1), 2), …, (가), (나), …, ①, ②, …등의 순으로 한다.

⑥도표의 기호는 <>로 하며, 표의제목은 도표의 상단에 기재하고, 그림의 기호는 [ ]로 표시하며,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기재한다. (신설 2010. 1. 19.)

⑦참고문헌은 국내문헌, 외국문헌(동양문헌, 서양문헌)으로 구분하여, 단행

본, 학술논문 순으로 작성한다.

⑧ABSTRACT이나 key words는 영어 또는 독일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어 논문의 경우 한국어로 표기한다. (개정 2010. 1. 19)

제3조(집필자 소개) ①집필자 소개는 각주란에 하되, “\* 법학박사(과정) · ○ ○대학(교) ○○학과 교수”의 형식으로 한다.

②공동연구논문인 때에는 논문작성에서의 역할(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자, 제1저자 · 제2저자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한글사용) 한글논문의 경우 논문 중 제목과 저자명 · 목차 · 타이틀 및 각주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문헌인용) ①국내문헌과 일본문헌에 대한 각주는 다음 요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1. 19.)

1. 저서: 저자, 「책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2. 논문: 저자, “논문제목”, 「책명」,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3. 잡지: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4. 학위논문: 저자, “논문제목”, ○○대학교 대학원, 박사(석사)학위 논문, 출판년도, 인용면.
5. 기념논문: 저자,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6. 신문: 신문명, 발간일자, 인용면.
7. 인터넷자료: 인터넷자료 인용면을 포함한 전체 웹주소.

②구미문헌(歐美文獻)에 대한 각주는 다음 요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저자, 책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2. 저자, “논문제목”, 책명 또는 잡지명, 권호,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③판례에 대한 각주는 “대법원 2008. 8. 8. 선고 2008다118 판결”, 또는 “대판 2008. 8. 8. 2008다118”로 하되 논문별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④논문각주에 페이지 표시는 ‘면’, 일본·중국문헌의 경우는 한자로 ‘面’, 영·미문헌은 p 또는 pp, 독일문헌은 S 또는 SS로 표시한다. (신설 2010. 1. 19.)

⑤각주에서 이미 앞에서 인용한 저서 또는 논문을 뒤에 다시 인용하는 경우 전계서 또는 전계논문(상계서 또는 상계논문)으로 표시하고, 영미논문은 op.cit 으로 독일문헌은 a.a.O 로 표시한다. (신설 2010. 1. 19.)

제6조(원고작성) ①원고는 ‘한글 97’이상 버전 또는 그와 호환되는 워드프로그  
램으로 작성한다.

②‘편집용지’는 A4, 여백은 상여백30, 좌우여백35, 머리말10·꼬리말 1  
0·제본 0으로 한다.

③‘글자모양’은 본문의 글꼴은 신명조로 하고, 크기는 제목 13(진하게)·단  
원제목 12(진하게)·본문 11 포인트로 한다.

④‘문단모양’에서 여백은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로 한다.

⑤‘각주’는 줄간격 130%, 글자크기 10포인트로 한다.

제7조(원고분량) 원고는 제6조의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20매内外로 한다.

제8조(원고제출) ①투고자는 원고를 연구소 홈페이지(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의 ‘논문투고시스템’에 원고마감일까지 업로드해야한다. 단 부득  
이한 경우에는 원고마감일까지 원고파일과 출력본 1부를 연구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원고마감일은 법과정책의 경우 12월 30일(2월 28일 발행분), 6월 30일(8  
월 30일 발행분), 국제법무의 경우 3월 30일(5월 30일 발행분), 9월 30일  
(11월 30일 발행분)까지로 한다.

③투고자는 원고제출시 ‘논문제재신청서(별지서식 1)’, 저작물이용동의서  
(별지서식 2)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9조(기타) (신설 2010. 1. 19.) ①투고논문은 게재신청당시 타 학술지에 일  
부 발표하였거나 타 학술지에 중복게재 신청한 논문도 투고가 허용된다.  
다만 타 학술지에 게재확정이 되었을 때, 중복 게재할 수 없다.

②원고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  
법인 한국법학교수회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은 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의 제2조 제6항, 8항 제5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2항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 법과정책연구소 학술지 논문 게재 신청서

논 문	제 목	(한글) 본인 투고 논문의 한글 제목을 기입하세요! (영문) 본인 투고 논문의 영문 제목을 기입하세요!			
	분 야	원고매수	A4	매	*
연 구 책임자	성 명	한 글	한 자		
	학위명				주민등록번호
	직 장	소 속			
	직 급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주 소			
핸드폰			이메일		
공 동 연구자	성 명	한 글	한 자		
	학위명				주민등록번호
	직 장	소 속			
	직 급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주 소			
핸드폰			이메일		

위 연구물에 대한 (법과정책, 국제법무) 제 집 제 호 게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법과정책연구소장 귀하**

- \* 원고매수에서 \* 부분은 논문집규정에 따라 재편집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합니다.
- \* 논문투고분야는 국제법, 민법, 민사소송법, 범사학, 법철학, 사회법, 상법, 세법, 행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법, 학제간 연구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는 학술진흥재단의 국내학술지인용색인(KCI) 작성에 필요합니다.

〈서식 2〉

## 저작물 이용 동의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논문제목	국문 : 영문 :	

본인은 본인의 연구결과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가 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약 래 -

1. 저작물의 DB구축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와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과 형식상 변경을 허락하고, 이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저작물을 이미지DB(PDF)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여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배포 및 전송에 관한 일체를 제공하는데 동의함.
3.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4.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 허락을 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법과정책연구소에 이를 통보함.
5. 배포·전송된 논문은 이용자가 다시 복제 및 전송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연구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함.
6. 법과정책연구소는 논문 이용을 허락한 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년              월              일  
저작자 :                          (서명 또는 인)

**법과정책연구소장 귀하**

## 법과정책연구소 학술지 투고윤리 등에 관한 규정

2008. 8. 18. 제 정  
2010. 1.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법과정책' 및 '국제법무'(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수록되는 학술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 편집 · 심사윤리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약)** ①학술지의 편집위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②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기고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③연구소 홈페이지상의 논문투고시스템에는 이 규정을 상시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①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 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된다.

③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④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법학지에 수록될 수 있다. 단, 그러한 작성경과를 적시하여야 한다.

⑤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④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⑥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⑦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⑧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본 연구소 학술지를 포함

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①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②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①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윤리위원회) ①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부소장, 편집위원장, 그리고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4인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③연구소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를 제시한 익명제보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보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의 위원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사대상 제보사건이 종결된 때까지로 하고, 회장은 위원 중 진실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체할 수 있다.

⑤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1/2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 할 수 없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⑥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본 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본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피조사자 등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⑨윤리위원회가 본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한다.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2.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연구소를 경유한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3. 향후 3년 이상 5년 이내의 연구소의 학술지 논문투고 금지

4. 전 제1호의 게재무효된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명, 저자명, 게재호수, 무효(취소)일자, 무효(취소)사유 등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보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제7조(이의제기 절차 등) (신설 2010. 1. 19.) ①윤리위원회 제재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증 방법을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윤리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 즉각 재심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조사, 심의, 의결에 관한 결과는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 당사자에 한해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회 조사 및 결정사항 또는 이의제기 및 재심의 결과는 3년간 연구소에 보관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개정) 본 규정은 연구소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의 제7조는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2005.12.22. 제정  
2008. 8.1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규정 제7조의 2에 의하여, 법과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법과정책' 및 '국제법무'(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법학전문 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발전시키고, 동 학술지에 게재될 연구논문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편집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본교의 전임교수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연구지원실장이 맡으며, 편집위원장은 보좌하고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편집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이 위촉·임명한다. 편집위원은 가급적 최소 4개 광역시·도 소재 대학 및 법학관련 연구소나 기관에 재직하는 교수 및 전문가를 포함한다.

④ 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은 '법과정책'과 '국제법무'의 속표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소장은 편집위원으로의 위촉이 예정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 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 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1년 이상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퇴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편집위원회에는 편집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임무) ①편집위원회는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2. 논문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논문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사정 및 개재여부 결정
4. 학술지의 편집·인쇄 및 출판
5.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중요 사항

②학술지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운영) ①편집위원회는 매년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연구소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회의를 주재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편집부위원장, 연구소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5조(명예와 비밀의 보장) ①편집위원은 연구소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편집위원은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비밀은 누설하면 아니 된다.

제6조(편집실무위원회) ①편집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편집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5인 내외의 편집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편집실무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개정) 이 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학술지 발행규정

2005.12.12. 제 정  
2008. 8.18. 전면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규정 제7조의 3에 의거하여 법과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학술지 '법과정책' 및 '국제법무'(이하 '학술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 ① 연구소의 학술지는 '법과정책'과 '국제법무' 2종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각 연 2회 발행하되, 발행일자는 '법과정책'은 매년 2월 28일, 8월 30일에, '국제법무'는 매년 5월 30일, 11월 30일로 한다.

③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는 접수일(2\*\*\*년 \*\*월 \*\*일), 심사완료일(2\*\*\*년 \*\*월 \*\*일), 게재확정일(2\*\*\*년 \*\*월 \*\*일)을 기재한다.

④ 학술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제3조(논문게재순서)** 학술지의 논문게재순서는 필자명의 가나다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획논문이나 특별기고논문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별쇄본 및 전자출판)** ① 채택된 기고자에게는 학술지 2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 다만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비용부담 하에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③ 법학지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할 수 있다. 전자출판의 경우에도 원문과 초록을 함께 제공한다.

④ 원고제출자는 연구소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기타 원고를 인터넷, CD-ROM 등 각종 모든 전자적 매체에 의한 전송 및 배포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에 관한 별도의 금전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5조(개정) 이 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